

제400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14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2)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6)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3)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7)
7.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2)
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8)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6)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4)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2)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4)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8)
14.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3)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3)
1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2)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7)
20.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4)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2)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0)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9)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4)
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5)
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7)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9)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7)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2)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1)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8)
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3)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1)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6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7)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9)
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5)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7)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0)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6)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0)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4)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7)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3)
7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5)
7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3)
7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0)
77.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0)
7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9)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2)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2)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3)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3)
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3)
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
8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3)
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85)
8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0)
8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3)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8)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5)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0)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0)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6)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9)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6)
9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3)
100. 경찰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0)
1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17)
10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1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9)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1)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3)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4)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4)

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4)
1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3)
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1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3)
1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11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5)
1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2)
117.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
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6)
119.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6)
120.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7)
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122.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2) 7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4) ... 7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 7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6) ... 7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3) ... 7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7) ... 7
7.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2) 7
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8) ... 7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6) ... 7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4) 7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2) 7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4) 7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8) 7
14.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0) 7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 7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3) 7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3) ... 7
1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2) 8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7) 8
20.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2) 8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4) 8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2) 8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 8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 8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990)	8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8
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9)	8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4)	8
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5)	8
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7)	8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9)	8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7)	8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2)	8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8)	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1)	8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8)	8
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3)	8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1)	8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8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8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8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8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8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8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8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8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8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8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8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8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8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8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8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8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8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8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9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9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9
6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7)	9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9)	9

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5)	9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7)	9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0)	9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6)	9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0)	9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4)	9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7)	9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7)	9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3)	9
74. 지역사회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5) ...	9
7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3)	9
7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0)	9
77.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0) ...	9
7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9)	9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	9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2)	9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2)	9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3)	9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3)	9
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3)	9
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 ...	9
8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3)	9
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85)	9
8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0)	9
8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3)	9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	9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9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8)	9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5)	9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0)	9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0)	9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6)	9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9)	9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6)	9
9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3)	9
100. 경찰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0) ...	9
1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9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17)	10
10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10
1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9)	10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10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1)	10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3)	10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4)	10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4)	10
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4)	10
1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3)	10
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10
1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3)	10
1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10
11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5)	10
1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2)	10
117.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	10
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6)	10
119.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6)	10
120.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7)	10
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10
○ 현안질의	16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태풍 북구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2)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6)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3)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7)

7.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2)

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8)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6)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4)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2)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4)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8)

14.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0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3)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3)

1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2)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7)
20.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 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4)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2)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0)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9)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4)
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5)
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7)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9)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7)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2)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1)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8)
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3)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1)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6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7)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9)
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5)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7)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0)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6)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0)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4)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7)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3)
7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5)
7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3)
7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0)
77.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0)
7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9)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1)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2)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2)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3)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3)
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3)
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
8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3)
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85)
8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0)
8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3)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8)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5)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0)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0)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6)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9)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6)
9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3)
100.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0)
1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1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4817)
10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1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9)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772)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31)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23)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14)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84)
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4)
1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3)
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44)
1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3)
1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11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65)
1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62)
117.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
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6)
119.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66)
120.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657)
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14시09분)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교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위원장 이채익 먼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홍·이만희 간사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빠빠한 의사일정에도 구두로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도입니다.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군사, 산림, 농업, 환경 등 중첩된 규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 지역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해도 여의도가 812개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 상실액이 무려 33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은 묵묵히 그리고 곳곳하게 대한민국의 산소 마스크로서 또 수자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왔고 희생해 왔습니다. 역대 최고 올림픽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155만 강원도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려가 만들어 낸 화합의 결실이고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급 체계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공약이 제시됐고 정부도 메가시티 구축이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전략을 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강원도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가 35만 명이고 춘천은 29만 명, 강릉은 21만 명입니다. 세 도시를 합쳐도 성남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인구가 강원도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대도시를 포함하거나 인접해 있지만 강원도는 그렇지 못해 메가시티 전략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5월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적 한계, 역사적인 한계, 규제의 한계를 깨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제정안 심사 때 부처 간의 이견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방소멸과 국가 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도와 세종특별시 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들어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변방, 소외와 소멸, 이중 삼중의 규제로 신음하는 강원도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완성된 특별자치제도를 실현해서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선도하는 생태, 에너지, 관광, 새로운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강원도의 이름을 새롭게 새기고자 합니다.

특별한 강원도, 특별한 강원도민을 위해 21대 국회가 강원도의 이름을…… 조선 태조 4년—1395년—강원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부여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은인이고 주인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도 지원위원회 설치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의원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되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를 해결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현행 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같이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이며 같은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8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사실상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안전관리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에서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공무원 재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현행 예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인사혁신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2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전사·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진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전사·순직하는 경우에는 순직 전날에 승진임용된 것으로 본 후 추가로 한 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경찰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님, 아까 의사일정은 이거……

○**김교흥 위원** 이거 의결하시고……

○**위원장 이채익** 조금 진행하고 해도 되겠지요?

○**김교흥 위원** 예, 의결하시고 주세요.

○**위원장 이채익**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 차관 소관 법률안, 진화위 소관 법률안 등 77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 3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의 우주개발과 산업자원부의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항공우주청을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주개발과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미국의 항공우주국,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 등과 같은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담조직의 소속 및 사무의 범위, 해당 사무의 통합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 즉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주민은 낚시어선 등 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법

에 따라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선 등은 안전운항 기준이 낮아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운법 등 관련 법률에 행정선, 관공선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는 행정선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조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국감조법과 같이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의회가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유형화하고 시정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정요구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감조법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 현행법은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정요구 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총 3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입장이 서로 다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재난방송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공동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과정에서 정부 및 방송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 정부가 제출하고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질병은 현행법령의 하위규정에서 이미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유사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들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생략해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및 제102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이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실제 승진임용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승진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순직자 특별승진 제도의 취지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진 여부가 확정되고 실제 승진임용 발령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당초 예정된 승진예정 직급으로만 특진 추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예정 경찰공무원이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청 소관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14항 김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일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승진임용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원래 승진임용이 예정돼 있는 계급으로 특별승진하게 되어 사실상 특별승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6항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등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은 화재 등 재난·사고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 특화된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기 전에, 아까 김교홍 간사님 의사 진행발언……

○김교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교홍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자 명단을, 자료를 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는 소속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지우고 앞의 글자만 남겨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왔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8월 30일 날 저희가 요청해서 경찰

청에서 제출한 참석자 명단, 경찰 참석자가 37명인데 장관께서 보낸 이 자료에는 경찰 명단이 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장모 담당 수사관, 송방섭 경위는 아예 자료에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주시고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말씀하신 바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아마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홍 위원 숫자도 전혀 안 맞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송 경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아니, 본인이 참석했다는데 뭘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공문으로 시행된 것들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참석자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교홍 위원 이거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백지를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현안질의하는 부분은 조금 회의 진행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대체토론은 야당 위원님들은 신청하신 분이 없고 국민의힘 위원 중에서는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비교섭단체 용혜인 위원님 세 분이 신청했습니다.

순서대로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나는 우리 야당 위원께서도 대체토론을 하시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야당 위원이 안 하시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채익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나오셨어요? 잘 안 보이시네.

○경찰청장 윤희근 예, 나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취임 후 1호 지시가 전세사기 근절이었

습니다. 우리 민생경찰 덕분에 한 달 만에 전국에서 85건, 198명이 검거되고 16명이 구속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전세사기 척결에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대체토론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현안질의 때 하세요.

○**조응천 위원** 대체토론은 아니잖아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조은희 위원** 법안 올라가 있잖아요, 이 법안이.

○**조응천 위원** 무슨 법안이요?

법안 대체토론이잖아요.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예, 현안질의로 하세요.

○**위원장 이채익** 조은희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일단 시작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 오늘 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받았는데요, 이것을 결정하고 합의하시는 것은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권한이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이 감사 계획서를 귀뜸도 없이 보는 것은 조금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안건을 논의하거나 혹은 채택하게 될 때, 물론 회의 10분 전에 공지하는 경우 저도 많이 봤고요 직전에 공지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최소한 회의 전에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지방세특례법 22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환 의원님 개정안 검토보고 보면 작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 그 논의를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건의 개정안 중에 김도읍 의원님안을 상정한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감면대상에 대한 복지부의 데이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

우니 일몰기한 도래할 때까지 정리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정부 측 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22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복지부 데이터가 정리가 될 테니 행안부에서도 감면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게 2020년 1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랑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 대상이었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좁혀지면서 이전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감면받던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면세기관에서 탈락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안부에서 집행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혹은 지침도 내리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소급적용을 하냐 마냐도 차이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각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각자 알아서 지자체들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서울의 한 센터는 2016년까지 소급적용이 돼 가지고 1억 3000의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아 냈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 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적용요령 지침을 송부하지 않아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준 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난번 개정으로 주민세 부과에 혼란을 겪은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좀 원활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많이 힘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행안부에 물어봤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책임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

원실에서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이게 일몰기한 다가오고 또 이번에 꼭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에게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사회복지법인으로 좁혀졌던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는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행안위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안전을 논의하실 때 장애인활동 지원시설들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내용 법안들 발의하셨으니까 많이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번에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정기국회 내에 낸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한 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거나 여성 정책, 젠더 정책,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날리겠다는 개정안이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발 빠르게 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계획서 등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배포가 안 되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알게 된다, 이거는 사전에 좀 공지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한테 사실 이번 국정감사 계획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자치단체를 좀 지목하고 싶은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야 국정감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또 변경 사유가, 국제대회가 있어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대전시장께는 정말 강력한,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요구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다 공지가 되고 국제행사가 다, 최소한 1년 전에 다 계획된 행사로 오늘에야 이렇게 변경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대전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 회의 시작 불과 15분 전에 가까스로 날짜가 변경 요청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또 위원님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이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상정된 121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1소위 위원장님과 이만희 2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안질의

(14시42분)

○위원장 이채익 법률안 심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행정안전부장관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마는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긴급한 현안을 조금 질의하시겠다 해서, 시간이 한 1시간 안에 마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마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질의 신청 안 했는데……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만 위원 지난주에 한남노 태풍이 한국에 상륙을 해서 처음에는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끝판에 경북 지역, 특별히 포항 지역에 엄청난 재난을 주었습니다.

혹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가 봤습니다.

○이성만 위원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일단 포항과 경주를 갔었는데요. 포항의 이재민들이 묵고 계시는 숙소를 갔다가요 그다음에 아파트 침수 현장을 갔고요 그다음에 침수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자 분들을 뵈었습니다.

○이성만 위원 제가 장관님의 활동 사항을 알고 싶은 것보다도, 포항에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특정 지역만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포항 전 지역이, 그러니까 지대가 좀 높은 지역 일부 빼놓고 낮은 지역은 전부 다 침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냉천 등 각 지천이, 갑자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오니까 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물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전부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아픔을 정부가 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적극 동의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농촌을, 주로 태풍이 불면 낙과라든지 또는 농작물 침수가 많았거든요. 그런 걸 주로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건데 기후위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른 집중강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침수 같은 현상이 올해는 강남도 일어났으니까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이제는 발달해서 그래도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개정도 하고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성만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재난안전기본법을,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진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참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수재를 계기로 해서 한 10여 개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이미 발족시켜서 지금 적극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만 위원 특히 포항에 당장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망자, 실종자도 다수 나타났고요.

그런데 현재의 재난 복구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은 상당히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200만 원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 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포항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 침수 지원율을, 현재 100% 수준이 200만 원인데 이걸 200%로 올려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시멈 한 400만 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100%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가 침수가 전 도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상가 침수가 엄청나게 많으니 이번에 한해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저한테 제안해 왔거든요.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만 위원 이것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만 위원 이미 이 두 가지 사항은 서울시는 했어요, 자체 재원으로.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 약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 간 차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 여력이 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성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율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방탄이다 뭐다 해서 질의를 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 성남FC 광고비 관련해서, 경기남부청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해식 위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해식 위원 뭐가 달라진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저도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번복됐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 이걸 이제 앞으로는 다 제삼자뇌물로 처벌해야 됩니까? 본질이 이런 거지요, 본질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이해식 위원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받은 것 아니예요? 두산의 요청에 의해서, 두산이 오퍼를 해 가지고 광고비를 협찬한 거잖아요. 공공기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은 15%다 10%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용도변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이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겁니까? 행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요, 뻔한 얘기인데.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 가지고 아무런 정황상의 다른 게 없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송치를 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참, 제가 볼 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경기남부청 해당 기능에서 아마 관련 법리 또는 판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휘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청장님도 그런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수분방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국정감사 때는 아마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이해식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엄정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수사하고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 잣대로 봐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보복이예요.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남부청, 7만 8000원 때문에 백스물아홉 군

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경기남부청입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남부청이?

이 정도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위원** 경찰청장님, 원래 성남FC는 매년 한 9억 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160억 5000만 원 후원이 들어오거든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9억에서 160억으로 오른 이 배경에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산그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두산그룹은 1996년도에 분당구 정자동에 의료시설용지 3005평을 약 72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병원을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성남시가 이 땅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하지요, 병원 짓겠다고 땅을 사 놓고 나서 땅투기 하려고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던 성남시가 10개월 이후에 이 의료시설용지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용적률이 250%였는데 이걸 670%로 2배 이상 올려 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은 불과 300평 받는다고,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용도변경허가를 결재한 사람이 바로 2015년 7월에 성남시장을 하셨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 특혜를 받고서 두산건설은 이 땅에 지상 27층 지하 7층의 분당두산타워라는 놀라운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건물은 6174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사실상 이 건물의 운영권은 두산그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72억 원에 샀던 땅에 6174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용도변경 때문이었고 이때 마침 두산건설은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을 합니다.

자, 이게 우연이고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나 강제수사도 없이 그대로 2021년 9월에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이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요. 당시에 보완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이 사직으로써 맞서 싸워서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당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이 돼서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장검사의, 자기 직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얻어 낸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장님, 분당경찰서에서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강제수사 한 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남부청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게 분당경찰서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감찰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웅 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암장되지 않고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입법절차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성남FC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분당경찰서 같은 데서 암장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건데 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수단 갖추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고발인 이의신청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이라든지 관련 보완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울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이렇게 법률안 제안설명하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설명도 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받고 대체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회와 행정부가 원활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경찰국처럼 시행령으로 막 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국은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도 가능하지만.

○**이형석 위원**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보다는 이렇게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행정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 추석 연휴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하셨는데 수도권 집중 완화나 국가 균형발전이건 어느 정부나 고민하고 또 해내야 될 과제, 숙제,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국내 대기업 3개 내지 다섯 곳과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주요 대학 등을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상도 구체화시켜서, 기간도 구체적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터뷰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을 윤석열 임기 내에 한 서너 개만 이전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대학이라고만 저는 표현을 했어요.

○**이형석 위원** 아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이렇게 기간도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기업 한 서너 개만……

○**이형석 위원** 그리고 대상도 대기업 이십 곳,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형석 위원** 대학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대학을 명칭한 바는 없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보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오보라기보다 저는 그

냥 주요 대학이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그건 아마 기자가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주요 대학을 기자가 이렇게 풀어서 써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저는 주요 대학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수도권, 지방 이전이나 또는 대학의 지방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하거나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행안부장관이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형석 위원** 아니, 대통령님과 교감이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런 걸 장관이 막 발표하면 어떻게 되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의 의견을 물어본 거니까요, 기자가.

○**이형석 위원** 아니아니, 국민들이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조선일보 맨 처음 기사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나중에 다른 신문들이 받아쓰면서 마치 정부 입장인 것처럼 조금씩 톤이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지요.

최초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이형석 위원**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중도에 사퇴했던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취학연령을 만 5살 입학, 취학연령을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큰 혼선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정부 정책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인터뷰에서 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장관의 아이디어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대기업의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형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되거나, 특히 장관들

입을 통해서 발표되는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이게 뒤에, 추후에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주 52시간 문제 또 박순애 장관의 취학연령 문제,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에서는 사실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서 또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아닙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형석 위원**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질문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시대를 위한 장관의 아이디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석 위원** 장관님, 그러시면 저도 더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장관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장관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발표하실 때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다랄지 또는 대통령과의 교감을 거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기자와 저 사이에 편하게 오고간 이야기인데……

○**이형석 위원**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개인, 사인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채익**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용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천 위원** 경찰청장님, 2차에 걸친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명문화되고 불송치결정권 등 종국적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권한과 지위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문제는 권한이 커진 만큼 과연 책임도 그만큼 커졌느냐, 책임지지 않는 권한은 그 자체로 부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행안위에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께 경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경찰법 제14조 6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면서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다가 ‘도대체 경찰 수사는 어떻게 통제를 받느냐’ 했더니 국회의 통제는 없어요. 다만 국수본부장의 직위가 헌법, 법률을 위반한 때는 탄핵소추 의결 가능하다, 경찰법에 있다. 그러면 애초부터 행안위의 통제는 예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청장님 그렇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5분밖에 안 돼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통제를 애초부터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는, 제가 법사위원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나와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면 극히 일부에 대해서 ‘그건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피해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아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찰청장은 ‘그것 보고 안 받아서 모른다,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법 14조 6항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송치됐거나 불송치결정이 된 사건은 보고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치했거나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원래. 왜 안 나왔는지는 내가 위원장님께 좀 이따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할 거지만 그것 하기 전까지는…… 수사 중인 사

건에 대해서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해 가지고 나오세요, 국수본부장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국감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만 국수본부장 통해 가지고 묻습니까? 그 7분, 5분, 3분 해 가지고 그게 끝나요?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절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는, 특히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로 가지도 않아요. 법사위에서도 못 묻습니다. 행안위에서도 못 해요. 그러면 이것 어디서, 국회 어디서 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장님은 모른다고 그러고,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을 안 드렸지만 사실 개관적인 건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응천 위원 아니요, 전혀, 국회 통제를 전혀 안 받겠단 얘기야.

그러니까 국수본부장 나오기 전까지는 송치됐거나 혹은 불송치결정이 난 것은 청장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조응천 위원 그게 경찰법 14조 6항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사 통제에 왜 국회에 의한 통제가 애초부터 없어요?

사건 처리의 적정성, 공정성, 적법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국회의 통제를 거쳐야지만 정당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코 경찰법 14조 6항을 위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위원장 이채익 예.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에 이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행안위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성남FC 사건 가지고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여야 패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대로 꼬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각도로 질의를 하고 청장은 모르겠다 하고 이려고 있습니다. 행안위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할 바를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국수본부장을 앞으로 상시 우리 행안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방금 조응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야 간에 법안 상정, 2022 국감 계획서 채택 이 2건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합의는 하지 않았습시다. 해서 오늘 국수본부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시다.

앞으로는 현안질의가 되면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서, 구체적인 정부 위원들의 참석 범위나 또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원만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장관님한테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아니, 일단 순서대로 합시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 민생특위와 같은 시간에, 2시에 열려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경찰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2018년에 고발된 사건이 4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시다.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2021년 9월에 불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사를 하게 됐고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 이게 지금 없었다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그냥 묻혀 버리는 거였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 그럴까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그 부분은 고발인 이의신청 말고 저희가 불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 가지고 90일간인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은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들 다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할 때와 이번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때의 차이가 뭐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문제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면죄부가 사라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단 말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를……

○조은희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반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진술이 사실로 돼서 영원히 죄가 은폐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으로 발령이 난 정진상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성남시 별정직 6급으로 성남시의 공용 휴대폰을 7대를 가지고, 회선을 5개를 했어요. 그런데 5년간 결제만 해도, 별정직 6급이 7000건을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성남FC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 가지 혐의 의혹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남FC 사건을 다시 조사하니까 진술이 바뀌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포함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

○조은희 위원 이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당연합니다.

○조은희 위원 지난번처럼 나중에 증인의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문제인 정부 시절에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성남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은수미 12년 동안 성남시의 키워드가 비리도시, 아수라도시 됐다, 성남시민들이 그렇게 좀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을 이번 수사에서는 제대로 좀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 간사님도 합의해서 2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용도변경을 통해서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좀 다른 차원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만 위원 만약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의 장들 다 수사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용도변경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수사가 되려면 사익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용도변경과 사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 줘야 수사가 되는 것이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격 특혜가 있다,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용도변경에 따라서 가격이 증폭이 됐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LH에서 하는 행복도시들 그냥 농촌 땅 받아다가 택지로 전부 다 용도변경을 하고 인천에 있는 앞바다 메꾸어서 녹지였던 곳을 다 상업용지로 바꿔 주고, 다 수사해야 됩니다. 몇백 배, 몇천 배 올랐어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효용성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용도변경이 사익과 전제 됐을 때 그렇게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이 수사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다른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이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하고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문 위원님 먼저 발언하신다고……

○위원장 이채익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장관님, 아까 우리 김교홍 간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행안부에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송방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문서로 된 것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진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진석 위원 공문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공문이 있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진석 위원 송방섭 경위에 대한 자료가 왜 없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거기 참석하신 분이 4만 1000명인데요. 그중에서 공문에 남아 있는 이름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냥 인터넷이나 메일로써 된 명단은 저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진석 위원 행안부에서 초청을 할 때 송방섭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이 그냥 초청할 수 있습니까? 초청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진석 위원 아니, 여기 공문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자료가 없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보는 거예요. 공문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명단을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문진석 위원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이 있단 말이지요. 송방섭 경위에 대해서 초청대상 명단을 해 가지고 보낸 공문이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료 없이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송방섭 경위라는 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공문에 명단이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문진석 위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니까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경찰청에 보낸 공문이거든요. 송방섭 경찰을 특정해서 보낸 공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이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공문에 이 명단이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만

약에 인터넷으로 왔지만, 경찰관이기 때문에 소속 청에 대해서 그날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공문 같은데요. 그 명단이……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자료 없이 막무가내 경찰청에 공문 보내서 이 직원을 그날 행사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또 맞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거지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문진석 위원** 그 당시에 있는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실제로 다 폐기를 했습니다, 5월 10일과 5월 13일에 걸쳐서. 그래서 아마 폐기된 명단에 있는 사람이면 없을 것이고요. 공문에 있는 명단이면 있을 겁니다.

○**문진석 위원** 저기 공문에 보시면 행안부 행정사무관 구은정 씨로 되어 있지요, 행정사무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구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진석 위원** 구은정 씨로 되어 있거든요. 저 직원이 지금 행안부 직원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알 수는……

○**문진석 위원** 행안부 정식 직제에 나오지 않는 직원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특별하게 초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행안부 정식 직제에 나오지 않는 직원이고요, 저 구은정 씨라는 분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자료를 다 폐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문은 다 남아 있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초청자 명단은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인터넷이나 메일에 첨부된 인사들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저게 공문으로 보낸 초청자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제출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이 공문이 아니고요. 명단을 말씀드리는데, 명단. 명단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냥 인터넷, 메일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진석 위원** 아니, 장관님, 명부라는 게 공문으로 남아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기초자료를 근거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게 상식적이고 행정의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다, 자료를 폐기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폐기하신 것 맞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말씀 끝나신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문진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에서 4만 1000명에 대한 초청장을 일괄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명의 명단이 그 당시에는 다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지웠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4만 1000명을, 메일을 보내기 위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엑셀로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 지웠고요. 그 명단 중에서 일부 추천 명단은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오고 간 명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문진석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별도로 문진석 위원님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오늘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경찰청장님한테 성남FC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1996년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 3000여 평의 정자동의 요지에 있는 땅을 두산그룹이 73억 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 종합병원을 짓겠다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 한 20년 흐르는 사이에 병원을 짓지 않으니깐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했던 성남시가 2015년도에 파격적으로 그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준 겁니다, 아까 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 부지에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또 용적률도 원래 250%에서 많게는 900%, 적게는 670%까지 용적률을 3배 이상 확장을 해 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벌 그룹에 말할 수 없는 특혜를 안겨 준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3억 원에 사들인 그 땅을 이용해서 지금 평가액으로는 무려 1조 원대에 이르는 빌딩을 세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남FC라는 시민축구단에다가 55억 정도의 광고비 협찬을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고비 협찬했던 기업들이 두산건설 이외에도 다른 6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네이버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은 40억 가까운 광고 협찬을 했지만 이번 사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일단 판단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이번 보완수사 때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 그 6개 해당 회사들에 대해서 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요.

말씀하신 그 회사 관련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반복되고 그에 맞는, 부합하는 증거가 확인이 된 거고 나머지 5개 회사는 최초 수사내용 그대로, 진술 반복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불송치결정을 하는 데 맞는, 그걸 바꿀 만한 별도의 증거가 안 나온 겁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술을 반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불송치결정에서 이번 기소의견 송치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당사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서면조사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조사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서면조사는 애초 불송치결

정, 그 수사 당시에 서면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바뀌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 없나 보지요, 명백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그 수사 기능에서 관련자 진술, 부합되는 증거 이것만 가지고 아마 판단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진술을 반복하고 반복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다,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일인의 진술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삼자가 또 나타난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제가 확인하고 보고받기로는……

○이만희 위원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애초 수사 당시에 동일인이었던 그 관계자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바뀌게 된 특별한 무슨 경위가 있습니까, 이유가?

○경찰청장 윤희근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만희 위원 아니, 같은 사람이 자기가 했던 진술을 갑자기 또 바꾼다고요? 뒷받침하는 그 증거는 뭘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

○이만희 위원 청장님, 보고는 다 받으시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안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특혜가 오고 간 내용들입니다.

제삼자뇌물공여라고요? 저는 이런 특혜가 주어진 뒷면에는 엄청난 다른 사항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한 수사, 송치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광범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FC 문제는 문제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

○김교홍 위원 아니, 그만 좀 하지.

○김철민 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 뭐 하러 합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그러면 나도 한 마디 할게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끝내 놓고 지금?

○위원장 이채익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민 위원 아니, 회의를 왜 그렇게 진행합니까?

○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명확하게 국회에, 각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에이, 정말로,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 못 하겠네!

아니, 청장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하겠다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켜야 하실 분이 어떻게……

○위원장 이채익 김철민 위원!

○김철민 위원 예.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철민 위원 아니, 위원장이라고 아무 때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나름대로 예의를 좀 갖춰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나 예의 갖추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예의 안 갖춘 적 있어요?

○위원장 이채익 김철민 위원!

○김교홍 위원 위원장님, 다들 얘기했는데 위원장이 또 거기다가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철민 위원 다 끝난 얘기를 또 하냐고요. 위원장이 정리하는 겁니까, 정리?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금?

○김교홍 위원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김철민 위원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웅 위원 자, 잠깐 진정 좀 하세요.

○위원장 이채익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에……

○김철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아니고 이채익 위원으로서 얘기하시라고.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요.

○김교홍 위원 발언하는데 오늘 보니까 다들 얘기했는데…… 나도 발언 안 했어. 오늘 하지 말자 그랬어, 이만희 간사가.

○김철민 위원 그 정도 예의는 지켜 주셔야지

말이야!

○김교홍 위원 그래 놓고 본인은 발언하고 말이야. 얘기 안 할라고 하니까 내가……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김교홍 위원 아니, 사사건건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철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을 존경해 왔는데 오늘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청장한테 얘기 다 듣고 여야 다 얘기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전 위원이 한 걸 다시 한번 청장한테 이래라저래라 또 지시합니까?

○위원장 이채익 아니, 지금 본 위원장이 국민적인……

○김철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 말고 이채익 행정위원으로 말씀드리라고.

○이만희 위원 간사님,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김철민 위원 내가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회의 진행하면서.

○위원장 이채익 아니, 어떻게 개별 위원이 발언하는 문제까지 야당 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할 수 있어요?

○김철민 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당 위원들 놓고.

에이, 정말, 나 안 해!

○김교홍 위원 발언권 좀 줘 봐요.

○김철민 위원 그만하라면 그만해!

○조은희 위원 아니, 소리 크면 다예요?

○김철민 위원 뭐라고요?

○조은희 위원 목소리만 크면 다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고함만 지르면 다냐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님, 지금 여기 위원회 자리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조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반말까지 하세요?

○김철민 위원 내가 반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조은희 위원 지금 반말하셨거든요.

○이만희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위원님.

(일부 위원 퇴장)

○김교홍 위원 나가면 어떡해. 정리하자고, 여기서.

자, 정리합시다.

○위원장 이채익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지 금까지 최대한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당 위원들의 불만을 안으면서까지 정말 야당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인 동시에 헌법기관의 개별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은 가능한 편향적인 또 여야 간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나름대로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또 이 부분이 문제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오늘 경찰청장께서 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좀 느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이 발언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교흥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만희 위원 간사님.

○위원장 이채익 이런 문제에 야당 위원들이 너무……

○김교흥 위원 왜 사사건건 그래요, 간사가.

○조은희 위원 아니, 왜 책상을 치고 그러세요?

○김교흥 위원 왜 말을 못 해요, 이 사람들 진짜.

○이만희 위원 아니, 지금 다들 왜 그러세요.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당 위원들이 발언할 때 여당 위원들이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위원장이 누가 봐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경찰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야당 위원이 과민반응을 하면 이 광경을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땃땃하다면 밝히고 또 의문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교흥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 안 주실 거예요?

○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부장관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교흥 위원 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채익 이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2항……

(일부 위원 퇴장)

자, 지금 국정감사 이것 오늘 의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8인)

김 교 흥	김 용 판	김 우	김 철 민
문 진 석	송 재 호	오 영 환	용 혜 인
이 만 희	이 성 만	이 채 익	이 해 식
이 형 석	임 호 선	정 우 택	조 은 희
조 응 천	최 기 상		

○청가 위원(3인)

장 제 원	전 봉 민	천 준 호
-------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강 민 정	허 영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상 조
전 문 위 원	박 규 찬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인 사 혁 신 처 장	김 승 호
경 찰 청 장	윤 희 근
소 방 청 장	이 홍 교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장	정 근 식